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5권 제3호(통권 제99호, 2014 · 가을)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과 형사정책적 함의 *

이 기 수**

국 | 문 | 요 | 약

일반인들은 물론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허위자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여건에서 허위자백이 일단 발생하면 유죄로 연결될 확률이 높고,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허위자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193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오판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높은 허위자백의 비중은 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허위자백을 단일주제로 연구하도록 하였다.

초기 실증적 연구에서 시작된 허위자백 연구는 많은 사례들을 밝혀내면서 허위자백의 존재를 입증하게 되고, 허위자백이 생성되는 원인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옮겨가며 자연스럽게 자백이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과 신문과정에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연구로 발전한다. 그리고 유죄판결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허위자백을 연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연구를 통해 허위자백은 없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의 교정, 신문기법의 개선,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 신문과정의 녹음·녹화 등 투명성 확보와 같은 여러 대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 주제어 : 허위자백(false confession), 허위자백 모델(false confession model), 영상녹화(videotaping interrogations), 피의자신문(interrogation), 개인적 위험요인(personal risk factors)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2)의 내용 일부를 토대로 최근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추가·편집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법학박사.

Ⅰ. 머리말

허위자백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죄를 스스로 행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허위자백은 형사절차에서 사생아(私生兒)에 비유할 수 있다.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을 통해 생겨난 허위자백은 해당 절차에 종사하는 수사관과 검사, 법관을 당혹스럽게 하고, 그 존재 자체로 형사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허위자백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그것이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일단 한 번 발생하면 유죄판결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이다.[1] 둘째, 허위자백을 한 무고한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그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며, 옥살이를 하는 등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중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허위자백은 수사나 재판절차의 위법성 또는 오류와 관련되어 있고,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허위자백을 연구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허위자백에 대한 연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형사법학계에서 허위자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허위자백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형사절차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그 대책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을 발전과정과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연구방향의 설정과 허위자백 연구가 제시하는 형사정책적 함의들을 고찰해 정책대안 마련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을 시기에 따라 종단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그와 함께 국내의 허위자백 연구실태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 연구성과가 주는 형사정책적 함의는 무엇인지 파악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짓지 않은 범죄를 허위자백하고 기소된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81%에 달한다고 한다(Richard A. Leo, Steven A. Drizin,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 in the Post-DNA World", North Carolina Law Review Vol. 82. No. 3, 2004, 900-904면).

Ⅱ. 허위자백의 의의

1. 허위자백의 개념 정의

자백의 개념은 "자신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이런 자백의 개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자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허위자백'의 개념 정의는 1980년대 이래로 학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Ayling은 허위자백의 개념과 관련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허위자백한 경우, 범했다고 주장한 범죄에 대해 절대적으로 결백한 사람들로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한다. 둘째, 허위자백한 범죄에 연루되긴 했지만 신문과정에서 그 내용이 과장된 사람들이다. Ayling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 허위자백으로서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다.[2] 그런가하면 '절대적으로 결백한 사람이 범죄에 대하여 자백한 것[3]'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고의적으로 위조되거나 실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자백[4]'이라고 하는 이도 있으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백하는 사람이 범하지 않은 범죄행동에 대한 상세한 시인[5]'이라고 정의하는 이도 있다.[6]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의 방식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 요소로 첫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혹은 '진실하지 않은'이라는 개념과 둘째,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시인'이라는 핵심적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와 앞서 논한 학자들의 정의방법을 활용하여 자백을 정의하고

---

2) Ayling, C.J., "Corroborating confessions : an empirical analysis of legal safeguards against false confessions", *Wisconsin Law Review 4*, 1984, 1121~1204면.

3) Gisly Gudjonsson, The Psychology of Interrogation and Confessions, A Handbook, Jon Wiley & Sons, 2003, 174면.

4) Ofshe, R. "Coerced confessions: the logic of seemingly irrational action" Cultic Studies Journal, 6, 1989, 1~15면.

5) Gudjonsson & Kassin,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ssu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st. Vol.5 No.2. 2004, 48면.

6) 허위자백의 개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기수,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 34-39면 참조.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요소를 활용해 허위자백을 정의하면 ① 허위자백은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실하지 않은 자백'임을 뜻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허위자백의 범위는 가장 넓게 설정되어 이견이 많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백을 하면서 일부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허위자백으로 포함될 수 있고, 이것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될 경우를 상정하면 유죄의 범죄자가 처벌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허위자백을 Gudjonsson의 기준으로 ②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범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범위는 매우 좁아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아님)이 내용을 과장하여 보다 크고 심각한 범죄를 자백한 경우나 다른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허위로 자백한 경우가 허위자백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런 경우 실제 범한 범죄보다 중형을 선고받거나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정의 방법도 형사사법적 영역에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제시된 두 번째 요소인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시인'이라는 기준을 활용하면 보다 적정한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허위자백이란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시인하는 진술'이라고 정의할 경우 Gudjonsson의 지나친 협소함이나 개념의 불필요한 확장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허위자백은 '실제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죄[7]에 대하여 시인하는 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7) 이때 범죄의 개념은 자백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적 사실의 일부만을 시인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백진술 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습절도와 같은 포괄일죄 중 일부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진술도 당연히 허위자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신미약이나 반성여부, 누범 등에 대한 진술은 허위자백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허위자백의 위험성

가. 높은 유죄판결 가능성

'자신에 불리한 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 신용할 가치가 있다'[8] 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체포나 구류 경험이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의 통념이다. 법관이나 검사도 다수는 그 예에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역시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허위자백의 위험성은 바로 위와 같은 자백의 힘에서 나온다. 그것이 허위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백이 갖는 힘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 미국의 실증적 연구[9]에 따르면 허위자백을 한 사람들이 정식 기소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81%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고, 오판(誤判)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10]에서 전체 오판의 원인 중 허위자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14~2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적인 사법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형사절차에서도 허위자백이 잘 가려지지 못하고 유죄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오판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11]에서 전체 오판 사례 중 허위자백으로 인한 것이 20.4%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허위자백은 자백이 갖는 높은 신용성을 토대로 허위임이 밝혀지기 전까지 형사절차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유죄판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범죄피해자에게 큰 모욕일 뿐만 아니라 실체진실의 발견을 최고 가치로 삼는 형사절차의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8) 浜田 寿美男, 『自白の研究』, 亞細亞印刷株式會社, 2005, 21면.

9) Richard A. Leo, Steven A. Drizin, 앞의 논문, 900~904면.

10) Hugo Bedau, Michael Radelet, "Miscarriage of Justice in Potentially Capital Cases", Stanford Law Review, 1987; Edward Connors, Thomas Lundregan, Neli Miller & Tom McEwen, "Case Studies in the Use of DNA Evidence to established Innocence after Trial", 1996.; Berry Sheck, Peter Neufeld, Jim Dwyer, "Actual Innocence : Five Days to Execution and Other Dispatches from the Wrongly Convicted", 2000. 참고.

11)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3, 108면.

나. 허위자백의 확산효과

허위자백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또 다른 위험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허위자백이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확산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확산효과(Multiplying effect)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한 사람에게서 허위자백을 받아내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연관된 다른 사람에게까지 허위자백을 받아냄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일단 허위자백이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강력하게 공범을 추궁하게 된다. 범인이라면 당연히 공범을 알고 있을 것이고 공범까지 밝혀내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야 수사가 끝나는 것이다. 최초로 허위자백한 피의자에 대하여 추궁의 강도는 강해지게 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던 피의자는 비슷한 심정으로 다른 공범들을 허위로 진술하면서 확산효과가 발생하게 된다.[12)]

실제 실증적 연구인 Drizin과 Leo의 연구를 보면 전체 125명의 허위자백사례 중 30%에 달하는 사건에서 확산효과가 발견되었다.[13)] 그 중에는 5명의 피의자들이 허위자백을 했던 'Central Park Jogger Case'[14)]도 있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허위자백 사례 46건을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15)]는 30.4%에 달하는 14건에서 허위자백의 확산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과 매우 유사하게도 '수원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경우에 미성년인 피의자 5명이 동일 사건에 허위자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

12) 확산효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사례 분석은 이기수, 앞의 논문, 113-117면 참조.

13) Richard A. Leo, Steven A. Drizin, 앞의 논문, 972-977면.

14) 미국 Central Park에서 조깅을 하던 백인여성을 성폭행 하고 사망 직전까지 몰고 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5명이나 되는 죄 없는 미성년 피의자들이 허위자백을 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유기징역을 살던 중 진범이 검거된 사건이다.

15) 이기수, 앞의 논문, 113-117면.

16)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기수,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2, 114-134면; 이기수, "허위자백의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형사절차상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제14권 제1호, 2012, 165-192면 참조.

다. 허위자백에 대한 오해와 실태파악의 어려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한 연구는 일반인들은 허위자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찰들도 허위자백이 그들의 조작적이고 기만적인 신문 전략에 의해 발생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7] 이러한 오해는 허위자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맞물려 허위자백에 관한 대책의 마련과 실행을 방해한다.

허위자백의 실태파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수사관, 검사, 법관들이 일반인과 유사하게 '허위자백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 실태파악에 소극적이다. 게다가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기록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재판기록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허위자백 사례들의 보편성을 정의하고, 문제점을 조사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요컨대 허위자백의 사례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허위자백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이를 바로잡을 실태파악이나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은 허위자백으로 인한 피해를 더 키울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 동향

허위자백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의 연구동향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먼저 외국 허위자백 연구의 발전단계별로 나누어 중심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고찰하도록 한다. 덧붙여 허위자

17) Richard A. Leo, Richard J. Ofshe, "The Consequences of False Confessions : Deprivations of Liberty and Miscarriages of Justice in the Age of Psychological Interrogation",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88, No2, 1998. 443-444면.

백의 연구는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두 국가의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허위자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허위자백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 미국에서 발견된다. Edwin Borchard는 1932년 그의 저서 “Convicting the Innocent”를 통해 죄 없는 사람이 잘못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65건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것은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는 결코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을 리 없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구는 허위자백이 포함된 오심사례들에 대한 간단한 고찰 내지 소개에 그쳤고, 허위자백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량화하거나 연구를 심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다.[18] 그리고 이후 수십 년간 Borchard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답습하는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심과 허위자백에 대한 연구의 도약은 1987년에 이루어졌다. Hugo Bedau와 Michael Radelet은 그들의 논문[19]에서 1900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에서 350건의 오심사례(사형에 처해질 가능성 있는 사례들)를 분석하여 그 중 49건(14%)이 허위자백으로 인한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 결과는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례를 모으거나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자극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위자백에 대한 관심도 역시 확대되어 갔다.

1990년대 이르러 DNA Test가 등장하면서 오심과 허위자백에 관한 연구는 또 한 번 획기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Edward Connors 등의 연구[20]에서는 28개 오판사례에서 18%가 허위자백으로, Berry Sheck와 Peter Neufeld, Jim Dwyer의 연구[21]에

18) Richard A. Leo, Steven A. Drizin, 앞의 논문(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 in the Post-DNA World). 900~902면 참고.

19) Hugo Bedau, Michael Radelet, “Miscarriage of Justice in Potentially Capital Cases”, *Stanford Law Review*, 1987.

20) Edward Connors, Thomas Lundregan, Neli Miller & Tom McEwen, “Case Studies in the Use of DNA Evidence to established Innocence after Trial”, 1996.

21) Berry Sheck, Peter Neufeld, Jim Dwyer, “Actual Innocence : Five Days to Execution and Other Dispatches from the Wrongly Convicted”, 2000.

서는 62건의 오판 중 25%를 차지하는 15건의 허위자백 사례가 제시되었다. 모두 DNA Test를 통한 연구였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에 대한 무죄입증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물이었다.

위와 같이 오판에 대한 연구는 허위자백이 오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5%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허위자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고, 이것은 허위자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첫 번째 허위자백을 직접적인 주제로 한 연구는 Leo와 Ofshe의 연구[22]로서, 1966년 Miranda 판결[23] 이후 발생한 60건의 허위자백 사례에 관한 것이다. Miranda 판결 후 미국 사회에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허위자백은 없을 거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찾아낸 60건의 허위자백 사례는 고문과 가혹행위가 없는 심리적 신문이 허위자백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두 번째 실증적 연구는 2004년의 Leo와 Drizin의 연구[24]였다. 이 연구야 말로 앞서의 Leo와 Ofshe의 연구를 바탕으로 허위자백의 실증적 연구를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최대 규모로 1970년대 이후 125건의 허위자백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허위자백으로 입증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 측면에서도 이전의 연구를 압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허위자백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시도하였고, 신문과정 녹화 등 허위자백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게 자극을 주어 이후 허위자백 연구의 발전을 이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허위자백의 원인에 관한 연구

DNA Test나 실증연구를 통해 허위자백의 존재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지면서 학

---

22) Richard J. Ofshe & Richard A. Leo, “The Consequence of False Confessions : Deprivations of Liberty and Miscarriage of Justice in the Age of Psychological Interrogation”,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88, No.2, 1998, 477~491면.

23) Miranda v. Arizona, 384 U.S. 436(1966).

24) Richard A. Leo, Steven A. Drizin, 앞의 논문(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 in the Post-DNA World).

자들의 관심은 허위자백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쏠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자백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자백의 이론적 모델'이라 칭한다. Gudjonsson은 그의 저서와 논문[25]에서 6가지의 자백 모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허위자백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모델로 Higendorf · Irving의 '의사결정모델'(A Decision Making Model)과 'The Ofshe/Leo Model'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Higendorf · Irving의 모델'은 피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피의자의 개인적 요소로서 피의자가 '자백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자백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허위자백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수사기관의 신문기법이다. 수사기관이 각종 신문기법을 구사함으로써, 죄 없는 사람까지도 자백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오인하게 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Ofshe/Leo Model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이 2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것은 첫째, 범죄를 부인하려는 피의자를 고립시키고,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을 무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극도의 무력감에 빠지도록 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단계인데, 4단계의 단계별 신문기법을 활용한다고 한다. 신문기법은 피의자의 도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저강도의 설득에서 시작해 형량과 관련한 고강도의 협박과 약속으로 구성된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고립되어 무력감에 빠진 피의자는 수사관의 전략적 신문기법에 반응하여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자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허위자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론적 모델을 구성해 피의자신문이 어떻게 허위자백을 유발하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25) Gisly Gudjonsson, 「The Psychology of Interrogation and Confessions」, A Handbook, Jon Wiley & Sons, 2003. 197-208면; Gisly Gudjonsson, "The Role of Personality in Relation to Confessions", *Psychology, Crime & Law,* June Vol. 10(2), 2004, 117~129면.

3. 최근의 연구동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자백에 대한 관심은 다시 신문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또 개인적 요인으로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Psychological Vulnerabilities)'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허위자백을 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까지 인지되지 못하고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것에 주목해 허위자백과 유죄판결의 관계,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허위자백에 대하여 갖는 태도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고 연구를 세밀화 해 나갔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허위자백 연구는 한 마디로 '연구 분야의 급격한 확장과 세밀화'로 표현할 수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허위자백의 실증연구와 함께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절차 전반에서 종합적인 허위자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연구의 경향을 3분야로 나누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는 피의자신문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Kassin 등의 연구[26]에서 미국의 수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Reid기법[27]과 영국의 PEACE기법[28]을 비교 실험한 결과, 후자가 진실된 자백의 비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허위자백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기법은 피의자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보다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한다. 또한 Gudjonsson 등의 연구[29]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

26) Kassin S. M. Sara C. Appleby, Jennifer Torkildson Perillo, "Interviewing suspects: Practice, science, and future direction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5, 2010, 39~55면.

27) 리드기법은 미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이었던 리드(John. E. Reid)에 의해 개발되어 1974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신문기법이다. 이 신문기법은 사실분석, 행동분석인터뷰, 무죄용의자 배제, 유죄용의자 신문이라는 단계를 거쳐 실시되는데, 영국의 PEACE기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피의자를 적대적으로 대하며, 기망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 "PEACE"는 영국에서 개발된 신문기법으로 새로운 신문방식의 5가지 차별화된 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Preparation", 'Planning', 'Engage' and 'Explain', 'Account', 'Closure', 'Evaluate'. 최근 영국경찰의 신문에서는 Reid기법처럼 고도로 적대적인 기반의 기법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신, PEACE기법이라는 완전히 다른 질문위주의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9) Gisly H. Gudjonsson and John Pearse, "Suspect Interviews and False Confessions", *Psychological Science* 20(1), 2011, 33~37면.

Reid기법은 PEACE기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미래의 주요 과제는 수사기관의 신문기법을 개선해 강압에 의하지 않은 진실한 자백을 최대화하고 허위자백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둘째는 허위자백과 관련한 연구의 또 다른 분야로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다. Kassin과 Gudjonsson의 연구[30]에 따르면 개인적 위험요인에는 성격요인, 미성년자, 정신지체 등이 있다. 연구에서 '미성년자나 정신지체가 있는 경우 신문 압력과 권위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Gudjonsson은 연구를 통해 정신적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이 왜 형사절차에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신문방식의 개선이나 전문가의 참여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31]

셋째는 허위자백과 유죄판결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Henkel 등의 연구[32]에 따르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들은 '허위자백의 발생가능성이 있고, 유죄의 절대적인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보였지만 그들 스스로는 허위자백을 안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nstanzo[33]는 배심원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은 '경찰관들이 일반인보다 거짓말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받아낸 자백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넷째는 앞서의 3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다. Kassin은 최근 연구[34]에서 수사기관, 피의자, 배심원들의 3주체가 각각 허위자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수사기관의 판단착오, 수사기법과 개인적 취약성, 배심원의 허위자백에 대한 맹신이 그것이다. 그는 대책으로 신문기법의 향상이나 배심원의

30) Kassin, S. M., Gisly H. Gudjonsson,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ume 5, No.2. November, 2004. 51~56면.

31) Gisly H. Gudjonsson,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during police interviews. Why are they important?",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5, 2010, 161~175면.

32) Linda A. Henkel, J. Coffman, Elizabeth M. Dailey, "A Survey of People'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False Confessions", *Behav. Sci. Law* 26:555–584, 2008.

33) Mark Constanzo, Netta Shaked-Schroer, Katherine Vinson, "Juror Beliefs About Police Interrogation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Vol.7 Issue2, June, 2010, 231~247면.

34) Saul. M. Kassin, "False Confessions -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249, 2008.

자백평가 방법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Leo는 그의 연구[35]에서 피의자신문, 신문에 영향을 받는 개인적 차이, 유죄판결에서 허위자백의 역할 등 3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는 어떤 허위자백은 유죄판결로 이어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가를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정의의 실패를 막는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오판연구에서 촉발된 허위자백에 대한 관심은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로, 다시 허위자백의 원인 관련 피의자신문이나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유죄판결과의 상관관계 연구로, 최근에는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대책을 제시하는 단계로 분야를 확대하고 세밀화하며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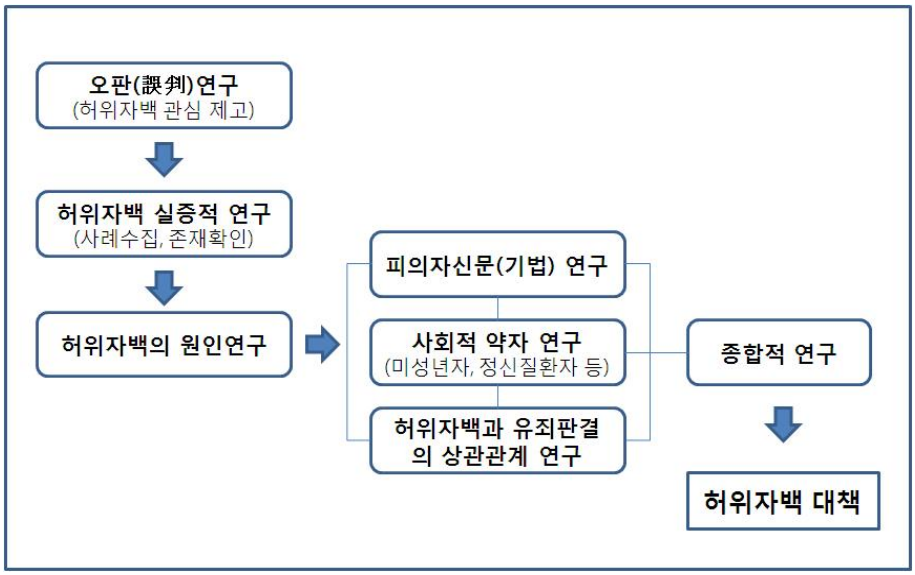

35) Richard A. Leo, Deborah Davis, “From false confession to wrongful conviction: Seven psychological processes”, *The Journal of Psychiatry & Law* 38/Spring-Summer 2010.

Ⅳ. 허위자백 연구의 형사정책적 함의

허위자백 연구는 형사절차상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이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갖는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값진 연구성과는 국내의 연구방향 설정과 형사정책의 지침으로 삼을만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내의 허위자백 연구 실태와 향후 과제를 논하고, 외국의 시기별 연구성과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국내의 허위자백 연구와 과제

국내에서는 2000년도 이후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허위자백을 연구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심리학계의 연구는 특정 사안을 분석하거나 실험을 통해 허위자백의 가능성이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허위자백을 직접 주제로 다룬 심리학계의 선구적인 연구는 김병준의 '허위자백의 심리구조-K순경(1992) 사건을 중심으로'(2003)[36]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1992. 11. 29.에 발생한 소위 '김순경 허위자백'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관 신분으로 허위자백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밝혀져 석방된 사건이다. 김병준은 Lacan[37]의 욕망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법심리학적 측면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허위자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수사와 재판관행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에 같은 맥락의 지속적인 연구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 논문 이후에는 심리학의 관점에서 허위자백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된다. 장훈도[38], 백승경 · 김재휘[39], 전미혜[40] 등이 특정 사안을 분석하거나, 실험을 통해 허위

36) 김병준, "허위자백의 심리구조: K순경(1992)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3년 6~8월호 연재, 2003.

37)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38) 장훈도, "허위자백의 실례분석을 통한 피의자신문 개선방안", 수사연구 제22권 4호, 2004.; 장훈도, "무죄 입증 가능성과 형벌의 감경약속 정도가 허위자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자백의 가능성 또는 영향을 다룬 연구를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리학적 차원의 허위자백 연구는 형사법학계의 허위자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심리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심리학계의 연구는 주로 신문기법 중 일부만을 주제로 삼기 때문에 연구의 폭이 넓지 못하며, 형사절차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실험을 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법제도적·실무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직접적으로 형사법적 발전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국내 형사법학계에서 허위자백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2년도에 이기수의 논문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41]'는 1990년대 이후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허위자백 사례 46건을 수집·분석하여 허위자백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형사법학계에서 처음으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허위자백을 다루면서 국내사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성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보다 많은 과제를 안겨주는 초기단계의 연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형사법학계에서 최근 연이어 연구논문[42]이 나오고 있고, 이들은 빠르게 외국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신문기법의 개선이나 신문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대책을 제시하면서 허위자백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국내의 허위자백 연구는 그 동안 심리학계에서 일부 이루어졌고, 형사법학계에서는 거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허위자백의 존재를 입증하고, 국내적 상황에서 허위자백의 원인을 밝히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구제할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형사법학계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39) 백승경/김재휘, "반복질문이 허위자백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3호, 2005.

40) 전미혜, "형벌의 감경 약속과 범죄 심각성이 허위자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8.

41) 이기수,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2) 권영법,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3호(2012, 가을), 91-127면 ; 김영수, "피의자의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의 고도화 방안",『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91-133면.

2. 허위자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주는 함의

국내의 현 상황에서 허위자백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허위자백은 없다'는 그릇된 통념[43]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위자백의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실증적 연구를 많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허위자백의 존재를 확인하고, 허위자백의 생성 원인을 밝혀내 허위자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마저 '허위자백은 없을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가진 것은 허위자백 피해자 구제와 문제점 개선에 가장 큰 장애물이므로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자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44] 교육의 내용은 당연히 국내외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허위자백의 사례, 피해자의 피해실태, 형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될 것이다.

3. 허위자백의 원인에 관한 연구가 주는 함의

실증연구로 허위자백의 존재가 명백해지면서 학자들의 관심은 허위자백의 원인으로 옮겨갔고 피의자신문이 일차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연구를 통해 미국 Reid기법의 위험성이 비판받고, 영국의 PEACE기법이 권장할만한 신문기법으로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들 두 기법이 완전히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경찰수사 교육기관에서 두 기법 모두를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명확한 가치

43) 그릇된 통념의 존재는 허위자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자백이 나오면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나 정황을 무시하는 수사관이나 검사의 행태가 발견되며,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토대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해버리는 법관의 행태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이기수, 앞의 논문, 허위자백의 사례분석 부분(p.123-217면 참조).

44) 교육은 일반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허위자백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교육을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다(Kassin, S. M., 앞의 논문(False Confessions -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249 2008.) 252면).

판단을 통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권장하고 있는 PEACE기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45]

한편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허위자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특별히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46]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국내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내의 실증연구[47]에 의하면 허위자백 피해자의 30.6%가 미성년자로 나타나는 등 보호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 제안하듯이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신문과정을 녹화하고, 의사소통 보조인[48]과 변호인의 필요적 입회, 전문가에 의한 진술분석 등 대상자를 허위자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형사정책적 대안들

학자들이 허위자백 대응책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은 신문과정의 영상녹화이다. 그 이유는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폭행, 협박 등 불법행위나 잘못된 신문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자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위법수사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수사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법정에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위논란을 제거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45) 피의자신문기법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는 이기수·김지환, "피의자신문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id Technique과 PEACE 모델 비교·검토를 중심으로",「한국경찰연구」제11권 제4호(2012 겨울), 234-257면 참조.

46)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취약성과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이기수,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0집, 2012, 599-628면; 이기수, 미성년자의 허위자백 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Dongkuk Law Review, Vol 4(2014). 참조.

47) 이기수, 앞의 논문(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99면.

48) 우리나라에도 이미 영상녹화나 보조인 동석이 규정되어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둘 모두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허위자백 사례에서 이 두 제도 모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녹화나 입회 등 모두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수사기관은 막대한 예산소요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실적으로도 예산의 부족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필자는 이미 녹음이야말로 예산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녹화의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한 바 있다.[49] 영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신문의 전(全)과정을 녹음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50]

아울러 최근 들어 잠을 재우지 않거나 장시간 휴식 없이 진행되는 신문이 허위자백의 주요 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51]에 따르면 허위자백 사례 중 6시간 이상 신문을 받고 허위자백한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문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피의자에게 하루 24시간 중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적 휴식을 제공해야하고, 신문 중에 매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실무규정[52]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자백 외에 물증이 부족한 경우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자백의 진위를 심사하는 '자백 후 분석(Post Confession Analysis)'제도[53]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이 범죄를 자백했을 경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자백했을 경우에는 심리학자나 검사, 수사관이 '철저히 자백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도입할 경우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는 전 사건에 대하여 의무적인 사후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물적 증거가 없거나, 자백 후 부인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신빙성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Brandon Garrette은 '미국의 형사절차가 신문절차의 사후검증이나 법원에 의한 자백의 신빙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형사절차가 자백의

49) 이기수·김지환, 앞의 논문, 250-251면.

50) 영국의 피의자신문 녹음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기수·김지환, 앞의 논문, 243-244면 참조.

51) Richard A. Leo, Steven A. Drizin,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 in the Post-DNA World", North Carolina Law Review. Volume 82. No. 3. 2004. 947면.

52) Interrogation Code, para. 12.2, 12.7, 12.11.

53) 이 개념은 미국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 취약성을 가진 피의자들의 자백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나 여기서는 수사전반에 걸쳐 적용될 필요에서 제안하고 있다.

신빙성을 향해 재탄생하지 않으면 사실의 오염은 탐지되지 않은 채로 계속될 것이고, 이것은 사법정의의 실패로 귀결될 것[54]'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백의 신빙성을 판별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55]을 설정하고,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결재과정 등을 활용해 자백의 진위판단을 위한 절차를 공식화 하고, 재판에서도 그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자백의 임의성 심사를 강화하고, 신빙성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56]

Ⅴ. 맺음말

형사절차에서 생겨나는 허위자백을 연구할 책무는 형사법학계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법학계에서는 허위자백이라는 단일 주제가 갖는 문제점의 재인식, 허위자백 생성 원인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허위자백의 개념과 생성원인을 명확히 하고, 실제 사례들을 찾아내 어떻게 국내의 형사절차에서 형성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형사정책적 대안들은 과감하게 도입·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위자백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형사절차상의 문제점, 즉 위법적 수사관행이나 잘못된 신문기법의 사용,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장애인 등 취약성을 지닌 약자들에 대한 부주의, 재판단계에서 형식적인 자백의 임의성 심사, 심도 있는 자백의 진위 판단기법과 심사절차의 부재 등 여러 문제들은 허위자백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허위자백은 물론 오판으로 이어져 형사절차의 대실패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인 것이다.

---

54) Brandon L. Garrett, "The Substance of False Confessions", Stanford Law Review, Vol. 62.4, 2010, 2051면.

55) 이기수, 앞의 논문(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으로 자백의 동기, 일관성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6)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를 실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더 상세한 논의는 이기수, 앞의 논문(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335-341면 참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책무는 비단 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고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계의 연구와는 별도로 관련 전문가나 형사절차 종사자 공히 허위자백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형사정책적 대안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도입·실천하려는 의지가 절실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허위자백의 피해를 예방하고, 혹여 생겨난 허위자백의 피해자를 찾아 구제함으로써 성공적인 형사정의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이기수,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2.

권영법,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3호(2012, 가을).

김병준, "허위자백의 심리구조: K순경(1992)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2003년 6~8월호 연재, 2003.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3.

김영수, "피의자의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의 고도화 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백승경·김재휘, "반복질문이 허위자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3호, 2005.

이기수, 미성년자의 허위자백 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Dongkuk Law Review, Vol 4(2014).

이기수,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0집, 2012.

이기수, "허위자백의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형사절차상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2.

이기수,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

이기수·김지환, "피의자신문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id Technique과 PEACE 모델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2012 겨울).

장훈도, "무죄 입증 가능성과 형벌의 감경약속 정도가 허위자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장훈도, "허위자백의 실례분석을 통한 피의자신문 개선방안", 수사연구 제22권 4호, 2004.

전미혜, "형벌의 감경 약속과 범죄 심각성이 허위자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8.

Ayling, C.J., “Corroborating confessions : an empirical analysis of legal safeguards against false confessions”, Wisconsin Law Review 4, 1984.

Berry Sheck, Peter Neufeld, Jim Dwyer, “Actual Innocence : Five Days to Execution and Other Dispatches from the Wrongly Convicted”, 2000.

Brandon L. Garrett, “The Substance of False Confessions”, Stanford Law Review, Vol. 62.4, 2010.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8th Edition, West Publishing, 2004.

Edward Connors, Thomas Lundregan, Neli Miller & Tom McEwen, “Case Studies in the Use of DNA Evidence to established Innocence after Trial”, 1996.

Gisly Gudjonsson, The Psychology of Interrogation and Confessions, A Handbook, Jon Wiley & Sons, 2003.

Gisly Gudjonsson, “The Role of Personality in Relation to Confessions”, Psychology, Crime & Law, June Vol. 10(2), 2004.

Gisly H. Gudjonsson,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during police interviews. Why are they important?”,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5, 2010.

Gisly H. Gudjonsson and John Pearse, “Suspect Interviews and False Confessions”, Psychological Science 20(1), 2011.

Gudjonsson & Kassin,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ssu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st. Vol.5 No.2. 2004.

Hugo Bedau, Michael Radelet, “Miscarriage of Justice in Potentially Capital Cases”, Stanford Law Review, 1987.

Kassin, S. M., “False Confessions -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249, 2008.

Kassin, S. M., Gisly H. Gudjonsson, “The Psychology of Confession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ume 5, No.2. November, 2004.

Kassin S. M. Sara C. Appleby, Jennifer Torkildson Perillo, “Interviewing suspects: Practice, science, and future direction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5, 2010.

Linda A. Henkel, J. Coffman, Elizabeth M. Dailey, “A Survey of People’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False Confessions”, Behav. Sci. Law 26:555–584, 2008.

Mark Constanzo, Netta Shaked-Schroer, Katherine Vinson, “Juror Beliefs About Police Interrogation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Vol.7 Issue2, June, 2010.

Ofshe, R. “Coerced confessions: the logic of seemingly irrational action” Cultic Studies Journal, 6, 1989.

Richard A. Leo, Deborah Davis, “From false confession to wrongful conviction: Seven psychological processes”, The Journal of Psychiatry & Law 38/Spring-Summer 2010.

Richard A. Leo, Richard J. Ofshe, “The Consequences of False Confessions : Deprivations of Liberty and Miscarriages of Justice in the Age of Psychological Interrogation”,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88, No2, 1998.

Richard A. Leo, Steven a. Drizin,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 in the Post-DNA World”, North Carolina Law Review Vol. 82. No. 3, 2004.

Stephen Jones, “Under pressure: Women who plead guilty to crimes they have not committed”,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1(1), 2011.

浜田 寿美男, 『自白の研究』, 亞細亞印刷株式會社, 2005.

International study trends on false confession and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Lee, Ki Soo*

Not only the public but also the experts who are engaged in criminal proceedings do not realize truly the fact that there is a ‘false confession’ to confess to a crime one did not commit. In such conditions, if false confession occurs, it has high probability of being ruled as guilty with the risk of spreading to other people beyond just one person. Although a lack of study on false confession is domestically evident, an international study on false confession that began in the 1930s suggests many implications to us. High proportion of false confession found during the process of study on misjudgment have increased its interest and brought forth a study on false confession as a single topic.

A study on false confession that started in the early empirical studies have proven the existence of false confession as it identified may cases, and as the focus was shifted to the interest on the cause of producing false confession, it was naturally developed as a study on the people having vulnerabilities in the process of interrogation and questioning which leads to confession. And by studying the relevance of conviction and false confession in the comprehensive level, it has now reached the phase of proposing measures for solving the problems.

Such international studies on false confession imply the necessity of urgent domestic studies on the same field. In addition, through the study, it allows us to realize the necessity of active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measures such as correction of erroneous perception that there is no false confession,

* Police Science Institute, Research Officer, J.S.D.

improvement of interrogation techniques, special treatment for those with vulnerabilities and ensuring transparency such as recording of interrogation process.

❖ Key words: false confession, false confession model, videotaping interrogations, interrogation, personal risk factors

투고일 : 8월 31일 / 심사(수정)일 : 9월 19일 / 게재확정일 : 9월 19일